「전북특별자치도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기업 지원 사업」참여기업 모집공고

전북특별자치도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도내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5년 2월 7일

(재)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

| 1 | 사 | 언 | 모 | 적 |
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_ | |

□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돌봄 지원으로 학부모 근로자의 경력 단절 예방 기여와 근로자들이 자녀 돌봄과 직장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유연한 근로환경 조성

2 사업개요

| 사 업 명 : |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기업 지원 |
|---------|---|
| 접수기간 : | 2025. 2. 10.(월) ~ 상시모집 *예산소진시 |
| 지원내용 : | 초등 1~6학년 자녀를 둔 직원 대상 10시 출근제(1시간 단축근로)를 |
| | 도입하는 50인 미만 도내 중소 제조업체에 장려금 지급 |
| | ⇒ 초등학부모 직원은 임금 삭감 없는 1시간 근무시간 단축 |
| 지원규모 : | 80건 정도 |
| 지원금액 : | 근로자 1인당 최대 110만원 장려금 지급 |
| 신청방법 : |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 신청 |
| 지급방법 : | 초등학부모 근로자 대상 단축근로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장려금 지급 |
| 신청기간 : | 2025. 2. ~ 10. *예산소진시 |
| | |

□ 선정방법 : 지원 요건 적합성 검토 후 예산범위 내 참여기업 선정

3 지 원 대 상 [자격요건]

- □ 지원대상 : 10시 출근제(1시간 단축근로)를 도입하는 50인 미만 도내 중소 제조업체
- 사업장 요건 :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도내 중소 제조업체

※ 지원 제외대상

- ① 참여기업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이외 지역인 기업
- ② 유흥·향락업 등 부적합 업체, 근로자 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업체(용역업체 등 포함)
- 청소년보호법 제2조 청소년출입·고용금지업소, 위생관리법 제2조, 풍속영업의 규제에관한법률 제2조, 사행행위등규제 및 처벌특별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업종(노래연습장업, 단란주점, 비디오물감상실업,이용업, 무도장업, 사행행위영업, 대역업, 복권발행업 등)
- ③ 공공기관, 복지기관(비영리기관), 민간위탁기관, 어린이집 등 국가·지자체로부터 인건비 및 수당 등 보조 대상자
- ④ 비영리 법인·단체·조합·협회 등
- 민법·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·학교법인·의료법인·사회복지법인·재단법인·비영리특별법인(한국은행, 한국철도공사 등), 어린이집 등
- ⑤ 3개월 미만의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(예 :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
- ⑥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
- ①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(보험회사, 제약회사,물류도매업 등)
- ⑧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공공기관 및「지방공기업법」에따른 공기업
- ⑨ 「초·중등 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
- ⑩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임금체불 사업장
- ①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,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 등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으로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
- **근로자 요건** : 초등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(부,모)
 - · 고용의 형태는 무관(기간제·임시·대체·수습 근로자 가능)하나, 근로계약서상 1일 8시간 이상 근무를 전제로 함.
 - 조손가정시 조부모가 고용보험가입 중인 경우 지원 가능
 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 중인 근로자는 해당 지원사업과 중복되어 참여 제외함.

※ 지원 제외대상(참여자격 배제)

- ① (협약일 기준) 참여기업에 재직하고 있지 않은 자
- ② (협약일 기준) 주민등록등본상 자녀와 같은 세대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자
- ③ (협약일 기준) 장기출장, 재택근무 등 출퇴근하고 있지 않은 자
- ④ 참여기업 대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인 자
- ⑤ 당해기업에서 병역특례로 근무 중인 자
- ⑥ (협약일 기준) 정부·지자체 등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자
- ⑦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
-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(F-2), 영주(F-5), 결혼이민자(F-6)체류 자격자는 가능
- ⑧ 고용보험 미가입자
- ⑨ 본 사업 참여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
 - (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중복참여 제한)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재정 지원 직접일자리 사업*에 참여하여 지원받고 있는 자
 - * (예시)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, 중앙-지방부처 인턴시업,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 등

4 지원금 지급

□ 지원기간 : 2025. 2. ~ 11.

□ 지원규모: 80건 정도

□ 지원금액 : **참여기업-근로자 간 유형 선택** 후 이에 따라 장려금 지원 [장려금 산출표]

| 구 | 분 | 장려금 |
|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|
| l 유형 | 1시간*1개월 | 400,000원 |
| 11 유형 | 1시간*2개월 | 700,000원 |
| III유형 | 1시간*3개월 | 1,100,000원 |

□ 지급방식 및 절차 : 지원요건 검토 후 참여기업에 장려금 지급

| 신 청·접 수 |
|-------------|
| • 신청서류 제출 |
| • 예산 소진 시까지 |
| 공고일 ~ 상시접수 |

| | 지급 서류 제출 |
|---|---|
| ₽ | 지급 증빙 서류 제출 (참여기업 → 경진원)지급 요건 검토 |
| | 쟤원 종료 후 5일 내 제출 |

| | 장려금 지급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| ●지급 요건 확인 ● 장려금 지급 |
| | (경진원 → 참여기업) |
| I | 재 종로 다음달 15일 자급 |

 \Diamond

Ⅰ 유형 신청 마감 : 10.24.
Ⅰ Ⅰ 유형 신청 마감 : 9.23.
Ⅰ Ⅱ 유형 신청 마감 : 8.24.

※ 예산 소진시 모집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
- □ 유의사항
 - 최초 신청 후 지원유형 변경 불가
 - 기업 내 단축 근로시간 적용 초등학부모가 복수인 경우, 최대 3명까지 인정 ※ 해당 사항은 지원현황 및 규모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
 - 매달 공휴일을 제외한 출근일(평일)에 단축근로를 모두 시행해야 함
 - 지원 시작일자는 서류 확인 및 지원 요건 검토 기간을 고려하여 10시 출근제 예상 시작일보다 <u>7일 전 신청</u>
 - 지원기간 완료 후 장려금 지급

(예시) Ⅲ 유형 : 4월 1일 ~ 6월 30일 → 장려금 지급 : 7월 15일

(예시) Ⅲ 유형 : 4월 15일 ~ 7월 14일 → 장려금 지급 : 8월 15일

- 10시 출근제 기간 미준수 혹은 근로자 근무 중단·퇴사 등으로 인한 협약 미이행 시, 제도 실시 기간에 대해서만 월할 계산하여 지급
- (예시) | 유형 선택 후 15일간 단축 근로 시행 시 장려금 미지급
- (예시) || 유형 선택 후 1개월 10일간 단축근로 시행 시 1개월분의 장려금(400,000원)만 지급
- (예시) Ⅲ유형 선택 후 2개월 10일간 단축근로 시행 시 2개월분의 장려금(700,000원)만 지급

- 맞벌이 부모 지원
 - •동일사업장 근무시 : 부/모 중 1명만 지원 가능
 - · 별도사업장 근무시 : 부/모 교차지원 가능 (3 ~ 5월 부 → 6 ~ 8월 모)
- 참여기업-근로자 간 협의 하에 9시 출근-17시 퇴근 가능

5 신청 및 접수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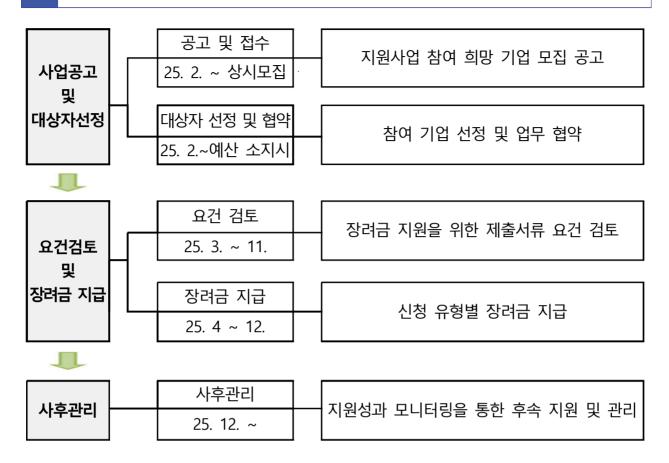
- □ 접수방법 :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(www.jbok.kr)에서 신청
 - 회원가입 ▷ 기업지원사업 ▷ 분야별 지원사업 ▷ [전북특별자치도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기업 지원 참여기업 모집공고] ▷ 신청하기
- □ 지원심사 : 신청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요건 적격 여부 검토
- □ 구비서류 :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(www.jbok.kr)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(www.jbba.kr)에서 다운로드 가능

| 연번 | 신청시 제출서류 | 비고 |
|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| 참가신청서(기업용) 1부 | |
| 2 | 확인서(참여기업용, 참여근로자용) 각 1부 |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동의 必 |
| 3 | 기업 서약서 1부 | 10시 출근제 도입 확약 |
| 4 | 사업자등록증,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| |
| 5 |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사업장 명부 사본 1부 | 상시 근로자 수 확인용 |
| 6 | 신청 직원 근로계약서 사본 | 현 출퇴근 시간, 급여 확인용 |
| 7 | 주민등록등본 1부 | 신청 직원 및 자녀 등재 확인용 |
| 8 | 재학증명서. 취학통지서 등 자녀입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| |

| 연번 | 완료 후 제출서류 | 비고 |
|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1 | 지원금 신청서 1부 | |
| 2 | 출근기록부 사본 1부 | 날짜·출근시간·해당직원 서명 기재 |
| 3 | 지원금 입금통장사본 1부 | 기업 명의 |
| 4 | 급여 이체 확인서(신청기간동안) | |

- ※ 사본 및 출력본은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
- ※ 발급서류(4대보험 가입자명부, 주민등록등본)의 유효기간은 최대 3개월
- ※ 기업 직인 날인 후 서류 제출

6 운 영 절 차



7 유의사항

- □ 접수서류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를 기재할 시에는 무효로 처리되며,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□ 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, 해당 참여기업으로부터 지원금을 환수 조치하며, 지원금 지급은 즉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.
- □ (재)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과 본 사업은 <u>"부정청탁 및 금품 등</u>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(김영란법)"에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,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□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기업성장팀 **2063)711-2035 / asm@jbba.kr로 문의**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자료

- 1. [서식 1] 참가 신청서(기업용)
- 2. [서식 2] 업무협약서
- 3. [서식 3] 확인서(기업용)
- 4. [서식 4] 확인서(근로자용)
- 5. [서식 5] 기업 서약서
- 6. [서식 6] 지원금 신청서